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16년도 제2차 회의록)

1. **일　　시 :** 2016년도 4월 8일(금) 08:01~09:36

2.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 (2층)

3. **참석위원 :**

보건복지부	정진엽 위원장
기획재정부	代 이찬우 (최상목)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광희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정식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혜경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원봉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길동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경식 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위원

4. **불참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위원
고용노동부	고영선 위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인상 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성봉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위원

5. 배 석 자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박인석(간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최홍석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이윤표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진영

6. 의결안건 : 〔의결16-2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의결16-3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7. 보고안건 : 〔보고16-5호〕 2016년도 제1차 위원회 회의록
〔보고16-6호〕 중기자산배분 TF 운영경과 보고
〔보고16-7호〕 2016년도 1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8. 회의경과

(회의시작 08시 01분)

○ **박인석 간사 :** 안녕하십니까? 연금정책국장입니다. 오늘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 **정진엽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아직 위원님들, 한 분 못 오셨나요?

네, 곧 오실 것으로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뵙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등 의결안건이 2건이 있고요. 그다음 중기자산배분 TF 운영경과 보고 등 보고안건 3건이 있습니다.

특히 중기자산배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이고 5월경에 정식 안건으로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은 그 전에 중간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무진들이 국내 경제전망 등을 토대로 해서 자산배분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자산배분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시면 검토해서 5월 정식 안건을 심의할 때 보다 효과적인 심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안건 중에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논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신진영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석 간사 :**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 취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가. 보고사항 :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정진엽 위원장 :**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보고 안건 중에 2016년도 제1차 회의록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찬을 드시면서 천천히 봐 주시고요. 식사 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시죠.

(조찬 중)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을 검토하셨을 텐데요. 회의록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보고 드린 내용대로 『2016년도 제1차 회의록』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공개 예정인 속기록도 미리 송부해 드린 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결사항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 **정진엽 위원장 :** 그럼 의결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6-2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석 간사 :** 배부해 드린 책자 1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입니다. 15쪽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투자정책에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환헤지 비율 변경 및 외환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 책임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헤지펀드 성과평가 벤치마크지수를 신설하고 기타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쪽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헤지 비율 변경 및 외환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작년 12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헤지 비율 변경 및 외환관리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침 개정안은 환헤지 정책이라는 용어를 외환관리 정책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환헤지 뿐만 아니라 외환익스포저 증가를 포괄하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외투자 및 외환단기자금에 의한 외환익스포저는 헤지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해외채권에 대해서는 100% 환헤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주식이나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50%, 그리고 2018년에는 모든 해외투자에 대해서 환오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미국 달러화(USD)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100% 환헤지를 해서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방어를 위해 전술적 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외환익스포저 규모를 ±3%, 그리고 '19년 이후에는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환익스포저가 특정 통화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략적 통화구성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조문화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책임투자 조항 신설입니다. 작년 1월 28일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항 4항에 책임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도 연금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침에 넣는 내용입니다. 21쪽입니다. 헤지펀드 성과평가 벤치마크지수 신설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 2월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고 그에 따라서 헤지펀드에 투자할 경우에 성과평가 벤치마크지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침 개정안은 박스에 보시는 그런 수식

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HFRI FoFs 관련한 지수는 시장에서 실현되는 헤지펀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15년 동안 약 3.5%로 나타나고 있고, 그 뒤의 것은 미국 단기금리에 4.5%를 더해서 5.9%를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연금에서 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목표로 삼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실현 가능한 수익률과 목표로 삼는 수익률을 반반씩 혼합해서 일단 4.7% 정도를 헤지펀드 성과평가 벤치마크지수로 설정하는 것을 기금운용지침에 담고 있습니다. 22쪽에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고요. 참고로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는 나중에 우리 신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 용어 정비와 관련해서 선매출 국고채 벤치마크지수 편입 시점과 관련해서 매출일 기준이라는 게 혼동이 있어서 이것을 대금 납입일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공시 대상 항목 용어 중에 수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도 좀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회수원금은 적립으로 가고 나머지 순수하게 유입되는 자금이라는 의미로 조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엽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신진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신진영 성과평가전문위원장 :** 네,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1월 21일 헤지펀드 성과평가 벤치마크 신규설정안에 대해서 2개의 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은 'HFRI Fund of Funds Composite Index'를 사용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시장지수인 헤지펀드 재간접펀드 지수로서 현재 절대수익률형인 장기목표수익률과의 보완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단기 성과평가와 시장 비교 목적에 용이하다는 것이 제1안을 검토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2안은 'HFRI FoFs'와 미국단기금리에 4.5%를 추가한 수익률의 가중평균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대평가형의 시장지수와 절대수익률형인 장기수익률 목표벤치마크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안을 검토하게 된

근거는 상대평가를 일부 보완하면서 최근 헤지펀드 인덱스의 낮은 수익률을 보완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장기목표수익률로 설정돼 있는 단기금리 + 4.5%를 계속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논의 끝에 제2안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HFRI FoFs의 과거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장기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장애가 된다고 보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목표수익률과 현재의 HFRI FoFs 지수 간에 혼합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중치는 현재 계속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이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비교를 통한 상대평가 원칙을 고려할 때 성과평가 벤치마크로서는 제1안이 시장지수가 더 정합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고요. 또 절대수익률형의 낮은 변동성을 반영한 현재의 혼합형 벤치마크 변동성은 실제 헤지펀드의 투자환경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추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준 위원님이 계셨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엽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정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정혜경 위원 :** 전체 다,

○ **정진엽 위원장 :** 아니요. 이번 안건에 대해서.

○ **정혜경 위원 :** 그러니까 그 주요 내용 네 가지에 관련한 의견이죠. 책임투자 조항 신설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언제 회의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작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관련한 개선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보고하셨었는데요. 그것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박인석 간사 :** 네, 작년 삼성물산 합병 건 이후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에서 전문위원회가 의결권에 좀 더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개별 건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3명이 요청할 경우에 전문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 개편 추진과 함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권한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혜경 위원 :** 관련해서 국민연금법에 분명히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에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쳤던 사례인 것을 보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정진엽 위원장 :** 다른 말씀 또 있으신가요?

○ **정혜경 위원 :** 그리고 세 번째 헤지펀드 성과평가 벤치마크지수 신설 관련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과거 수익률이 낮아서 벤치마크 수익률로 추종하기 부적절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안인 혼합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과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거 HFRI 지수의 수익률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신진영 성과평가전문위원장 :** 최근 15년 간 지수의 평균수익률이 3.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헤지펀드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장기목표수익률을 미국 단기금리 + 4.5%로 했기 때문에 최근 15년 간의 수익률만 보게 되면 장기목표수익률에 미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헤지펀드가 이렇게 낮은 수익률로 갈 거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의 헤지펀드 성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앞으로 단기간이라도 이런 트렌드가 유지된다고 하면 장기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한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2개를 혼합하는 방안을 지금 시행하기로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초기에는 50대 50으로 해서 가중치를 설정했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시장 추이를 봐서 이 가중치는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 **정혜경 위원 :** 과거 수익률이 낮아서 벤치마크 수익률로 추종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정도인데 굳이 이것을 2안으로 선택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신진영 성과평가전문위원장 :** 글쎄, 부적절하다는 표현까지는 저희가 쓰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 **정혜경 위원 :** 이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신진영 성과평가전문위원장 :** 네. 사실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저희가 쓰는 과정에서 그게 표현이 좀 과했고요. 다만, 이게 헤지펀드 마켓이라는 것이 상당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 15년간의 성과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단기목표수익률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을 부여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2개를 혼합형으로 했고요. 만약 헤지펀드 수익률이 다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가중치를 그쪽에 더 높여감으로써 조정할 생각입니다.

○ **정혜경 위원 :** 그럼 연동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박인석 간사 :** 헤지펀드는 작년에 투자하도록 결정을 해 주셨고, 아직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정혜경 위원 :** 알겠습니다.

○ **정진엽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네.

○ **송원근 위원 :** 책임투자 부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에 명시하고 나서 기금운용지침에도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기금운용지침에 명시가 되면 기금운용상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의결권행사지침하고 여기 지금 기금운용지침의 책임투자 부분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사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평가위원회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것을 위임을 하는 형식이지 법적이나 시행령상에 근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지침을 거기서 셀프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진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이후에 어떤 거버넌스 변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인석 간사 :** 네. 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반영하는 것은 원래 의결권행사지침에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는 특별히 반영 안 해도 법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금 반영이 늦었다, 이게 행정적으로 좀 처리가 늦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법과 지침에 이런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사회, 지배구조, 환경,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요소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은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1 원칙이고 그런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서 책임투자가 고려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법상 위원회는 아니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설치한 전문위원회이고, 그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

서 저희한테 주신 상태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희 위원 :** 제가 관련해서,

○ **정진엽 위원장 :** 네, 김광희 위원님.

○ **김광희 위원 :** 다음 번 안건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칙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마침 마이너한 거지만 수당 얘기, 이런 운영에 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권행사지침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운용지침 제37조의 2, 6항에 보시게 되면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매년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침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가 사실 이것을 제출하기를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저께 어저께 보건복지부에 그 사항을 좀 여쭤봤습니다. 의결권전문위원회에서 보고된 게 있는지.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도에도 한 번도 여기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나중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 2월 달에 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일주일 전에 의결이나 보고안건을 위원들한테 회람을 돌립니다. 2014년 2월 마지막 회의 때 최종본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 회의는 다른 여타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읽고 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받은 사항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유인자료로 받은 사항이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기만행위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사소한 거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의결권행사위원회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차후에 벌어진 일을 생각을 하시면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작년도에 그렇게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체 거두절미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여타 집단으로부터 허수아비 집단이라는 둥 전문성이 없다는 둥 정말 듣기 거북한 말을 듣지만 제가 의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차치하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컨시스턴시(Consistency)가 없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것을 재의를 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 위원들은 지금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도표 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해 놓지만 허수아비 집단이라는 얘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을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문위원회의 성격부터 명확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의 72페이지를 봐 주시면 국민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칙입니다. 7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1조에 전문위원회의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그 얘기는 전문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스텝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규정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보시면, 73페이지에 24조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 하면 운용위원회는 의결안건, 보고안건을 취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는 실무평가위원회조차도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

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돼 있습니다. 21조 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말에,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저희한테 주신 자료와 다르게 유인자료에 살짝 끼워서 의결권전문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이런 기본적인 흐름도 무시한 채 기본적인 법의 취지도 무시한 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의 잘못을 제가 끄집어내자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이것을 위상 있는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한 번 다시, 보직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한 이유는 이게 보건복지부만의 사항이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보직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들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차후에 지배구조를 어떻게,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일부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고도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다고 욕을 먹는 이유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능대표 모임으로 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으로 갈지, 이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앞으로 있을 지배구조가 정말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단순한 프라이빗펀드가 아니라 퍼블릭펀드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단순하게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만으로 갈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제에 간사 직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사항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의결권결정위원회, 제가 그것이 거기에 갔든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컨시스턴시(Consistency)가 있게, 그리고 정말로 이 기금

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논의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 위원회가 허수아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식 위원 :** 잠깐만 한 말씀,

○ **정진엽 위원장 :** 네.

○ **이정식 위원 :** 상당히 지혜로운 말씀과 제안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최저임금 1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는데 나름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지금 우리 김광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허수아비다, 전문성이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전문성과 대표성, 오랜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제안은 장관님도 새로 되셨고 간사도 새로 되셨으니까 이참에 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나라나 보건복지부로 봐서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민주적이고 실질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위원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자고 위원회에 와서 회의를 할 때 그냥 뭉개지고, 뭉개지고 했는데 오늘 이게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저는 이참에 보니까 여기 지침도 그렇고 위원회 운영규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몇 가지 바꾸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서면결의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일단 민주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것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쉽게 가고자 하는, 나름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지침과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나 여기 위원회의, 대부분의 경우는 3분의 1이 발의하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김광희 위원께서 그리고 우

리 민주노총 정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한 참에 저는 지침과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대해서 다른 규정과 지침을 준용해서 보건복지부의 다음 회의에 안건으로 제시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엽 위원장 :** 우리 김광희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확실히 클리어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께서,

○ **박인석 간사 :** 네.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떤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일부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실관계에 의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014년 기금운용지침 회의 안건 관련해서 그 당시 상황이 2월 24일 날 실무평가위원회를 했고 2월 28일 날 기금운용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촉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안건이 7일 전에 나가다 보니까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이 정리가 안 된 그런 안건이 초기에 발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 기금운용위원회 하는 2월 28일 날은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있었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안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차이는 아니었고 이미,

○ **김광희 위원 :** 잠깐만요.

○ **박인석 간사 :** 제가 좀 말씀을 다 드리고,

○ **김광희 위원 :** 네.

○ **박인석 간사 :** 이미 기금운용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의결권행사지침에 일관성 있게 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게 아니고 기금운용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의결권행사지침에, 왜냐하면 의결권행사지침이 기금운용지침하고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을 어긋나게 그렇게 다르게 돼 있어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바로 잡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희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간사님,

○ **최홍석 연금재정과장 :**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말씀해 주시면,

○ **김광희 위원 :** 제가 그저께 어저께 질문을 드렸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간사님께서 제대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밑에서 의견 개진해 주신 것을 그대로 지금 읽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실질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은 정말, 글쎄요. 개인마다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에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2014년 2월 달 이후에, 작년도의 사건을 한 번 반추해 보시면, 감히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 그 조항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조차, 거론조차 꺼내지 못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좀 표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한 번 읽어보십시오. 운영규칙과 지침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맞췄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최홍석 연금재정과장 :** 위원님, 32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32페이지 5항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기금운용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연금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김광희 위원 :** 이게 지금,

○ **최홍석 연금재정과장 :** 그 결정이 뭐냐 하면 4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2006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의결권행사지침에 안 바뀌었던 부분을 맞춘 거였습니다. 단순 조문 정비로 저희는 그 당시에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해서 기금위에 올려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김광희 위원 :** 지금 아마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전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 **최홍석 연금재정과장 :** 위원님, 이 운용지침은 제가 2004년, 5년, 6년도에 사무관 시절에 저희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들을 모시고 만들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광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 **최홍석 연금재정과장 :** 저는 작년 6월에 왔지만 간사는 바뀌더라도 복지부 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김광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지침보다도 위인 운영규정을 보시게 되면, 21조 사항과 24조 사항을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부사항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 안건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세요.

○ **정진엽 위원장 :** 네. 우리 김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이것을 논의할 시간은 부족한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도 규정하고 우리 지침이 좀 상이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 때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선 이번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그럼 이번 의결안건에 대해서 더 의견이 없으시면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 의결사항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정진엽 위원장 :**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6-3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박인석 간사 :** 책자 53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록과 의사록에 대한 서명·기명날인 규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경미한 안건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공과 업무설명 등을 명문화합니다. 그리고 수당을 세분화해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주요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회의록·의사록에 대해서는 별도 서명과 기명날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매번 회의 때마다 전차 회의록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절차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 개개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 절차를 없애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인받는 절차로 하는 것을 첫 번째 개정안으로 담았고요. 55쪽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서면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평가위원회 서면 심의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현행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추가해서 서면 심의를 확대하는, 실무평가위원회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평가위원회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인데 이 건도 이

것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서면 심의를 하자, 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서면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 3분의 2가 사전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8쪽에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59쪽에 지금도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 업무 설명 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규정에 명시해서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위원 수당을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심의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불해 드리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엽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죠.

아까 이정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간사께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안도 좀 만들어 보시고요.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네, 류기정 위원님.

○ **류기정 위원 :** 개정에 대한 취지나 이 부분에는 공감하고 절차적으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놔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경미한 경우라는 것이 구체적이지는 않죠. 뭐가 경미한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경미하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우리 김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이게 기금운용위원회, 이런 식으로 쭉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기금위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 실무위나 전문위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무평가위원회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이 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그런 절차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경미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거나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미한 부분

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경미하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인석 간사 :** 네, 경미한 경우라는 것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그것을 정의해 놓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미리 판단을, 안건을 보시고 이것은 경미한 거니까 서면 심의를 해도 되겠다고 동의하실 경우만 경미한 경우로 봐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그런 절차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미한 것이냐의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류기정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에 따라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나 이쪽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회의 전체에 경미라는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만 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명확한 뭐가 있어야 경미하다는 게 나오는 것이지, 개인에 따라서 판단이 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경미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정혜경 위원 :** 위원장님,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서면 심의를 하지 않게끔 한다는 나름대로 그 실평위의 중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왜 새삼 다시 개념도 불명확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미한 경우 또 긴급한 사안의 경우, 이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데 왜 새삼 이 서면 심의를 확대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박인석 간사 :** 저희가 서면 심의를 확대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고 당연히 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모이시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령이 바뀐다든가 할 경우에 그 내용을 빨리 규정에 담아야 되는데 모이시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모이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규정에 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좀 부적절해서 그렇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3분의 2가 동의를 해 주시는 전제 하에서 서면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혜경 위원 :**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대면 회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확대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박인석 간사 :**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엽 위원장 :**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실무 입장에서 일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경미하다는 것을 정의하기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은 경미인데 이게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말씀주시죠.

○ **송원근 위원 :** 네, 제가 부가말씀 드리면 제가 실무평가위원회를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실무평가위원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대표성을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있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의결정족수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도 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간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운용위원회 열리기 4일 전에 실

무평가위원회가 열린다든가 빨리 여기서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 채워야 된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 확대가 아니라 서면 심의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길동 위원 :** 네, 같은 의견인데요. 서면 심의에 보니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것은 가결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제동 장치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박인석 간사 :** 네, 말씀주신 대로 경미한 경우가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 3분의 2가 동의를 하는 그런 사안에 한해서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달았습니다.

○ **이정식 위원 :** 두 가지를 전제로 정리하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확대하는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찬성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법령에 그대로 맞춰서 자구 수정한다든가 그런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경우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전제로 저는 이것을 회의 진행상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첫째는, 54쪽에 있는 차기 회의에 보고하는 데에 앞에 있는 절차를 생략을 했는데 이게 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앞에 설명 가운데 별 표시하고 순서도를 쭉 화살표로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전에 전차회의록을 사전에 열람을 하고 잘못됐는지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회의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위원들이 와서 서명하는 절차, 그것은 형식적이지만 해 놓으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회의된 내용들이 예를 들면 다음 회의에 와서 사전에 확인하고 나 지난번에 한 것, 물론 메일로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수정할 것 수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는 절차잖아요. 그 확인된 사인이 바깥으로 나가면 나중에 정보공개 요구할 때 저는 훨씬 더 신뢰도

가 높다, 그래서 이것을 고칠 필요가 없거나 회의록에 이것 그대로 있으니까 방금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서면결의를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말든가 이것을 그냥 이 회의록에 반영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든가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절차를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우리가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니까 우리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엽 위원장 :**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록 서명하는 것, 이게 회의 끝나고 이 자리에서 서명을 받지 않나요?

○ **박인석 간사 :** 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번거롭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확인하시는 절차를 다 거쳤는데 거기에 다시 서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서명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 **정진엽 위원장 :** 아니, 위원님들을 번거롭지 않게 해 드리려고 이것은 지금 고치자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경미한 사항. 그것은 또 우리 류기정 위원님께서 지적은 해 주셨는데 지금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이 3분의 2의 동의를 거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것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이게 사실 여기서 회의록을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듣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일단 검토를 하신 걸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회의록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소수의견이 있으셨다는 내용을 좀 기록을 해 두시고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린 내용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혹시 더 추가로, 오늘 안건이 아직 더 있는데요. 그럼 더 의견이 없으

시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소수의견을 기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보고사항 : 『2016년도 1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 **정진엽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보고 안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냥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다수)

○ **김상호 위원 :** 제가 위원장님 하나만,

○ **정진엽 위원장 :** 네.

○ **김상호 위원 :** 관련돼서 지금 보칙 74쪽 맨 위에 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업무 설명 및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가벼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표성하고 전문성, 두 개의 축을 다 지금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대표성은 일정 부분 담보돼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외부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기회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기금운용위원회가 이것 관련해서 그 전에도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몇 번 여기서 들었거든

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기금운용포럼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것 관련돼서 저희 위원들께서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해 드립니다.

○ **정진엽 위원장 :**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해 보죠.

그러면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 박수)

(폐회 09시 36분)

위 會議錄은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會議內容과 相違없이 速記法에 의하여 記錄, 作成되었음을

確認함.

2016年 4月 8日

도울速記事務所

速 記 士 姜 朱 映